

영등포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4. 4. 1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290호로 2014년 4월 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로굴착 시 복구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최소 굴착면적
및 최소 굴착 폭을 상향 조정하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로굴착 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최소
굴착면적 및 최소 굴착 폭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 1)

- 나.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괴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의 기준을 추가함(안 별표 2)
- 다.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에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추가(안 별표 3)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도로법」 제76조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타구개정 : 서대문구 외 6개구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 굴착에 따른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도록 굴착 최소면적과 최소 폭을 0.7m에서 1.2m로 상향 조정하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소홀로 보도를 손괴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보도 횡단 차량 출입시설 표준단면의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에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추가함.

○ 본 조례안은 현행 보도 굴착공사 기준이 굴착 최소 폭을 0.7m로 규정하고 있어 복구공사 시 다짐 장비를 투입하지 못해 부실공사가 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다짐 장비 투입이 가능하도록 최소 굴착 면적 및 최소 폭을 1.2m로 조정함으로써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되며,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보도를 손괴한 경우 손괴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기준을 신설한 것은 주민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여겨짐.

또한 보도공사의 각종 주요 방침 및 기준을 정비하여 발간된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보도 복구 공사의 정밀시공 및 주민 통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시 전체 도로에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음.

관 련 법 령

■ 『도로법』

제76조(원인자 부담금) ①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0.3.22, 2013.3.23>